

2020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 공고(안)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의 경쟁력 제고와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역량이 탁월하고, 기술혁신 의지 및 활동이 우수한 기업연구소를 '우수 기업연구소'로 발굴하여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및 신청·접수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연구소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1. 개요

- 공 고 명 : 2020년도 상반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 추진목적 : 기업연구소*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 혁신 경쟁력 제고 및 질적 성장 견인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 지정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명의 지정서 발급)
- 위탁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장”)
- 지정 단위 : 기업연구소(예시 : OO기업 OOO연구소)
 - * 기업이 여러 개의 기업연구소를 운영하는 경우, 동일 회차에 한 개 기업연구소만 신청 가능
- 지정 유효기간 : 지정 확정일로부터 3년
- 인센티브 : 지정서(현판) 수여, 각종 홍보 등을 지원하고 이후 정부포상 및 국가R&D사업*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확대 예정
 - * 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ATC+) 등

2. 신청자격

-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기술혁신 성과가 우수한 기업
-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일 것
 - *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이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연구소 운영기간 인정

3. 신청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과거 3년 이내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연구소를 인정받았거나 변경신고로 직권취소를 받은 경우(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제1항 제1호)
 -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 인정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설립신고를 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및 기업의 장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4. 지정절차

- 자가진단 및 접수 : 자가진단 통과 기업에 한하여 신청·접수
- 심사절차 및 방법 : 발표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 등으로 진행하고 전문분과위원회 및 종합심사위원회 구성시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 진행
 - * 종합심사 후 지정 예비 공고 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이의조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

< 심사절차 >



- 자가진단

- 심사방법 : 자가진단 평가지표
- 심사항목

구분	분류
기업 역량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경영자의 역량 및 능력, 리더십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외부 혁신활동
	핵심 보유기술 관련 활동
	지식재산권 / 기술개발 및 사업화 / 대외인증 및 수상
연구소 (R&D) 역량	재무적 성과
	기술 및 시장 경쟁력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인적자원
	연구개발 장비, 표준화 등 연구개발환경
	정부 R&D 지원 및 투자 실적
내부 혁신활동 / 외부 혁신활동	
핵심 보유기술 관련 활동	
지식재산권 / 기술개발 및 사업화 / 대외인증 및 수상	
기술 경쟁력	

· 자가진단결과 : 자가진단 결과 60% 이상 획득 시 자가진단 통과

- 접수

-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자가진단 통과 후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 접수
-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협회장이 요청한 기간 내에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제출

- 발표심사

- 심사방법 : 연구소·기업역량 및 핵심 보유기술 역량 발표·면접을 통한 정성평가(전문분과위원회)
- 심사항목 : 정성평가

평가항목		심사기준	배점
연구소·기업 역량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 기술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등	30
	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등	20
	내부자원 분석능력	· Technology Tree, 기술 로드맵 구성 수준 등	20
핵심 보유기 술 역량	연구개발인력	· 핵심보유기술 개발 인력 비중 등	40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 연구개발 장비 구성 등	30
	기술혁신 수행능력	· PMS, ERP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등	25
	핵심 보유기술 관련 지적재산권	· 핵심보유기술 관련 지재권 보유 건수 등	30
	기술개발·사업화 (예상) 실적	· 핵심보유기술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등	35
	핵심 보유기술의 기술 경쟁력	·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등	30
핵심 보유기술에 의한 시장 경쟁력	·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등	40	
합계			300

- 심사결과 : 발표심사 결과 210점 이상, 현장심사 대상으로 선정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점수의 평균

- 현장심사

- 심사방법 : 제출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핵심보유기술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연구소 현장방문 실시 (현장심사단) ※ 발표평가지 추가 요청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
- 심사항목

평가항목		심사기준
평가 및 판 정 사 유 요 약	핵심보유기술 관련 내용	1-①. 핵심보유기술 개발 능력을 보유한 인력구성 및 수준 관련, 실제와 자가진단평가와 발표심사 내용의 현저한 차이 여부 등 종합적 확인 1-②. 핵심보유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환경 관련, 실제와 자가진단평가와 발표심사 내용의 현저한 차이 여부 등 종합적 확인 1-③. 핵심보유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능력 등 경쟁력 관련, 자가진단평가와 발표심사 내용의 현저한 차이 여부 등 종합적 확인
	핵심보유기술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2-①. 연구소 전체 연구개발인력 수 및 연구개발인력의 최종 학력 등 인적자원 구성이 자가진단평가 및 발표심사 내용과 불일치 여부 확인 2-②. 자가진단평가 및 발표심사 내용과 인적자원 구성은 동일하나, 신기술 개발 추진능력,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 조직 관리 수준이 현저한 차이 여부 확인
	핵심보유기술 관련 연구개발장비 등 연구환경	3-①. 연구소 전체 연구개발장비 구성이 자가진단평가 및 발표심사 내용과 불일치 여부 확인 3-②. 자가진단평가 및 발표심사 내용과 연구개발 장비 등 구성은 동일하나,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기술표준화 수준, 연구개발환경 수준의 현저한 차이 여부 확인
기타	4-①. 발표심사에서 요구된 추가 확인 및 요청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 심각한 문제점 발견 여부 확인 4-②. 제출한 서류의 허위 또는 조작 여부 확인	

- 심사결과 : 평가를 통해 종합심사 대상 선정

- 종합심사

- 심사방법 : 발표 및 현장심사를 토대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의 적합성, 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종합심사위원회)
- 종합심사를 통과한 기업연구소는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대상으로 확정

- 지정예정 공고 및 확정

- 종합심사를 통과한 기업연구소에 대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시 확정

- 지정예정 공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 심사 후 최종 확정
- 우수 기업연구소로 최종 확정된 기업연구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확정공고

5. 이의신청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의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
- 협회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당기업에 요청(요청 기간 내 답변서 미제출 시 이의신청 사실 인정으로 간주)
- 이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수용여부 확정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0. 2. 17(월) ~ 2020. 3. 18(수)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www.toprnd.or.kr)
- 온라인 작성 및 파일(아래한글, PDF)첨부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	①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붙임 1] 양식
	②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붙임 2] 양식
	③ 표준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 제조원가 명세서,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등 - 국세청 또는 세무사 직인 날인된 재무제표만 인정	확정 재무제표의 최근 3년
	④ 신청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 결과 - 고용보험(www.ei.go.kr)→기업서비스에서 출력	최근 3년
	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인력현황 출력본 - 연구소신고(www.rnd.or.kr)→신고내역보기 출력	최근 3년 (변경신고 기준)
	⑥ 신청기업 본사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 제출	⑦ 특허등록원부	최근 3년치*
	⑧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증빙서류	최근 3년치*
	⑨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함

- *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자료 인정
※ 발표심사 발표자료(PPT) 사전 준비 및 별도 제출

7.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기업연구소 보유 시 1개 연구소만 신청가능
- 동일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업종을 구분하여 신청
※ 매출액 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 또는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유형고정자산이 큰 업종으로 분류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정 신청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지정 취소 등) 가능

8. 문의처

- 담당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양미현 선임과장, 이유진 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
-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 - 3460 - 9026~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 - 202 - 4737
※ 신청서 접수여부, 제출서류 작성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붙임2 :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붙임1]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서

1. 회사 및 연구소 개요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주 생산품	주 연구분야											
	종업원 수	명	연구원수	명									
	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사) (연구소)	상장여부											
지정 대상 기업연구소	연구소명	연구소 인정번호	연구소 인정일자										
핵심보유 기술	핵심보유 기술의 명칭		신청분과 []위원회										
	기술핵심단어 [] [] [] []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휴대전화)	전송	전자우편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회사연혁	<table border="1"> <tr> <td>2018년</td> <td>8월 코스닥 상장 기술성평가 통과</td> </tr> <tr> <td>2016년</td> <td>5월 GMP 인증 획득 9월 00사 합병 12월 사명 변경 (XXX → AAA)</td> </tr> <tr> <td>2015년</td> <td>3월 대기업 A사와 공동개발 계약(XX억원 규모) 5월 병역특례업체 지정 10월 XX벤처투자조합 투자유치(XX억원 규모)</td> </tr> <tr> <td>2013년</td> <td>10월 기업연구소 설립 11월 벤처기업 인증</td> </tr> <tr> <td>2010년</td> <td>5월 법인설립</td> </tr> </table>			2018년	8월 코스닥 상장 기술성평가 통과	2016년	5월 GMP 인증 획득 9월 00사 합병 12월 사명 변경 (XXX → AAA)	2015년	3월 대기업 A사와 공동개발 계약(XX억원 규모) 5월 병역특례업체 지정 10월 XX벤처투자조합 투자유치(XX억원 규모)	2013년	10월 기업연구소 설립 11월 벤처기업 인증	2010년
2018년	8월 코스닥 상장 기술성평가 통과												
2016년	5월 GMP 인증 획득 9월 00사 합병 12월 사명 변경 (XXX → AAA)												
2015년	3월 대기업 A사와 공동개발 계약(XX억원 규모) 5월 병역특례업체 지정 10월 XX벤처투자조합 투자유치(XX억원 규모)												
2013년	10월 기업연구소 설립 11월 벤처기업 인증												
2010년	5월 법인설립												

위와 같이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신청하오며,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을 위한 심사평가 등에 본인 및 참여인력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의 활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붙임2]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1.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재무상태	①총자산(원)			
	②총부채(원)			
	③부채비율(%)			
	④보유 산업재산권 금액			
연구개발 및 연구개발 수요 계획	⑤매출액(원)			
	⑥연구개발비(원)			
	⑦외부 연구개발비 금액(원)			
	⑧연구장비 투자금액(원)			
	⑨종업원수(명)			
	⑩연구개발 전담요원수(명)			
	⑪연구전담요원 중 석박사수(명)			
	⑫정부포상(수상)실적			
	⑬대외기술인증실적			

상기 작성된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공인회계사(세무사)

(인)

20 년 월 일

※ ①~⑧ 항목은 회계결산 기준이며 직전년도 결산 미확정시,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기재
⑨~⑬ 항목은 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 작성방법

1. 재무상태

- ① 총자산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
- ② 총부채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
- ③ 부채비율 : 재무상태표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
- ④ 보유 산업재산권 금액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

2. 손익계산

- ⑤ 매출액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
- ⑥ 연구개발비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기준으로 작성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 개발비(당해연도 발생분 기준) + 손익계산서상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제조경비)
- ⑦ 외부 연구개발비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기준, 외부에서 투입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
- ⑧ 연구장비 투자금액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 기준, 연구장비 관련 투자 금액 기준으로 작성

3. 연구개발

- ⑨ 종업원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회를 통해 작성(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⑩ 연구전담요원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작성(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R&D인력 작성시 연구보조원/관리직원은 제외
- ⑪ 연구전담요원 중 석박사수 : ⑩에 기재한 R&D인력 중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보유한 인력의 수를 작성(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⑫ 정부포상(수상) 실적 : 해당연도에 신청기업이 정부로부터 수여받은 포상 건수를 작성
- 장관상, 국무총리상, 대통령표창 및 훈·포장만 포함(협회장상 등은 제외)
- ⑬ 대외기술인증실적 : 신청시점 기준, 유효한 대외 기술관련 인증 건수를 작성

□ 작성시 유의사항

- ①~⑧ 항목은 반드시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작성할 것

2.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역량

구분	주요내용
①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기술혁신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 및 방침이 정립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
② 기술혁신 중장기전략수립	중장기(향후 3~5년) 기술개발의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와, 실현 가능성, 적절한 계획인지 여부 등을 설명
③ 개발환경 및 연구장비 보유 수준	사내 창조적 개발환경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설명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 설명
④ 연구인력 관리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시스템 등을 설명 - 우수 연구인력을 유치 및 보유를 위한 기업차원의 활동 - 연구인력 규모 및 구성의 우수성
⑤ 기술혁신 수행능력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체내 기술혁신 수행 능력 등을 설명 - 연구 및 생산 시설의 보유 및 외부활용 포함(시설의 보유 및 외부활용 전략, 외부 시설의 활용체계와 성과 등)
⑥ 기술축적 및 활용시스템	보고서, 분석자료,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화/자료화 및 개발에 참여한 인력의 노하우 관리, 매뉴얼, 데이터베이스화 등의 형태로 관리 활용하는 실태 등을 설명
⑦ 기술보호 수준	기술보안수준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정도를 설명 - 내부 보안관리 규정 보유(제 개정), 규정과 연계한 보안심사위원회 운영, 보안전담 조직 또는 인력보유,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정기수행 실시 여부 등 포함
⑧ 지적재산권 경쟁력수준	기술혁신의 결과로 출원 또는 지적재산권의 경쟁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 - 보유 또는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 성과 등 포함
⑨ 사업화 추진역량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기술 및 품질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 등을 설명
⑩ 기술경쟁력 및 시장경쟁력 향상도	기술혁신의 결과로 경쟁력 향상 정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등을 설명 기술혁신의 결과로 시장경쟁력 향상 정도는 어떻게 예상될지 등을 설명

3. 연구개발 개요서

① 핵심보유기술 및 기술경쟁력
(작성내용은 우수 기업연구소 지정예정 공고시에 활용 예정)

② 기업연구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 성과내용

③ 기업연구소에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전략 및 내용
(기업연구소에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작성)

④ 지난 3년간 수행한 대표적인 R&D과제
(개수 제한없음, 정부과제 또는 자체과제도 무관, 현재 수행중인 과제도 작성 가능)

연 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내 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관련 제품	관련 매출액 (백만원)

4. 대표이사 및 핵심연구인력

대표이사 주요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핵심연구인력 약력(4명 이내)			
김철수 (CT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이영희 (연구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홍길동 (수석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5. 대표 제품(기재할 제품이 많을 시 표를 추가하여 작성)

	제품명	품목구분	제품사진
	출시일	18년 매출액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산업재산권 출원 현황

구 분	명 칭	발명자	국 명	등록일	등록번호	공동출원 기 관

※ 해당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7.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현황

구 분	명 칭	발행처	일 자
정부포상			
정부인증			

※ 해당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